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2월 1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24일

라. 상정일자 :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의 고지에 관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에 정의된 용어에 대해 일부 삭제(안 제2조)

-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식별장치만 장착(안 제 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제2호의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 후 제6호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하였음.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정의를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한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것임.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 안 제7조제2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던 것이 무선식별장치만 장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10 호
----------	---------

제출연월일: 2021. 2.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의 고지에 관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정의된 용어에 대해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조항 일부 삭제 (안 제2조)
- 나.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에 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을 폐지(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21. 2. 4. ~ 2. 7./ 3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3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를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등록대상동물”이란 <u>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u></p> <p>3. “반려동물”이란 <u>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u></p> <p>4. “소유자 등”이란 <u>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5.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등록대상동물”이란 <u>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생 략)</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시행령 제5조-----

-----.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

-----.

② -----
-----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